

#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

## ■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
신청자격	<p>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(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)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제2항2제5호 및 「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」에 해당하는 자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(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.)의 종사자</li> <li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·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.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.</li> <li>나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문 약국의 종사자.</li> <li>다.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, 「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,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.</li> </ul> </li> </ol> <p>② 「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」 제3조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”이라 함은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임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기업의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의 당해지구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당해지구에 외국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.(당해지구 안에 연구소만 소재 하는 경우는 제외)</li> <li>나. “종사자”라 함은 「근로기준법」에 근로자중 상용근로자로서 1년 이상을 당해기업에 종사한 근로자를 말한다.</li> <li>다. “약국”이라 함은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을 말한다.</li> <li>라. “의료기관”이라 함은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한다.</li> <li>마. “교육기관”이라 함은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.</li> </ul>
당첨자 선정방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함.</li> <li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함.</li> <li>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며, 대상자(당첨확정자 또는 예비자)도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청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. (청약 미신청 시 계약불가)</li> <li>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임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임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. ※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(한국부동산원)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.</li> </ol>
유의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주택법」 제64조(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) 및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73조(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)의 규정에 준용하며,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 받은 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,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.</li> </ul> </li> <li>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주택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함.</li> <li>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특별공급 청약접수 전 사업주체에 신청서를 제출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대상자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 하여야 함.</li> <li>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7호의 “당첨자”로 간주되며,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및 주택소득 등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8조에 명시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.</li> <li>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.</li> </ol>